

고성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964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. 3. 20. 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 2006. 3. 20.
다. 상 정 의 결 일 자 : 2006. 3. 28. 산업건설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개정이유

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 규정 삭제와 발생된 폐기물의 적정처리 규정을 위반한 개인 또는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을 지역상품권 등 현물 지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개인 또는 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제한 등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개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종량제봉투 판매시 현금 판매로 현실에 맞게 불필요한 규정 삭제(안 제15조)
나. 신고대상 폐기물 불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,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 목적 전문신고의 경우 포상금 지급 제한(안 제25조의2)
다. 신고포상금 지급시 현금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25조의2)
라. 개인이나 단체별 지급 총액은 월20만원, 연간 100만원으로 제한 (안 제25조의2)
마. 건설폐기물(5톤미만) 등 처리 수수료를 종량제 봉투 가격에 맞게 조정 (안 별표4)

4. 참고사항

가. 입법예고

- 고성군 공고 제2005-659(2005. 12. 28.~ 2006. 1. 16)
- 의견 및 제출사항 없음

나. 관계법령

- 폐기물관리법, 동법시행령, 동법시행규칙
-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신고대상 폐기물의 불법행위를 구체화 시키고 신고자에 대하여 현금 지급과 아울러 지역상품권 및 현물을 대체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의 명문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개인 월20만원, 단체 연간 100만원으로 전문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한토록 하였습니다.
- 별표 4의 쓰레기 봉투 담그기 어려운 폐기물의 수수료중 건설폐기물중 가연성 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을 종량제 봉투 가격에 준하는 수수료란을 신설하여 수수료 수입을 증대토록 하였으며
- 조례중 법 제명 변경으로 수정 및 조례의 본문중에서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명 앞뒤에 낫표 (「 」)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도록 법제처 개선사항에 의거 수정하였으며, 2005. 12. 28 - 2006. 1. 1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이사항이 없었으나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조례 이므로 본 개정안은 심도있는 심사 후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 보고 합니다.

6. 질의 및 답변

- 문 : 가정에서 생기는 5톤미만 콘크리트와 페아스콘이 톤당 17,500원으로 일반공사장에서 발생하여 폐기하는 건설폐기물 톤당 단가와 같습니다?
● 답 : 다릅니다.
- 문 : 반입되는 건설폐기물 톤당 산출근거가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어떻습니까 ?
● 답 : 우리군보다 같거나 다소 높습니다.

7. 토 론 : 없음

8. 심사결과

- 2006. 3. 28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